붙임 3: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 기준

(비수도권 지역인재) <u>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 으로 서울/경기/</u>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. 중퇴한 자 또는 재학. 휴학 중인 자

※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,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

- 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 - 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 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상의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 - (2)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 - 해당교 :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,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,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,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(※ 2017년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)
 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 - (4)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 - 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 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 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 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 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- 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 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 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 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